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의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외에 교육·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중앙행정기관(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학교 : 시·도교육청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중앙행정기관
5. 법 제2조제1호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 : 개별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 등의 지도·감독 기관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1월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실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지체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실행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실행 결과를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실행계획의 확인·점검 등)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결과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행계획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리 확인·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를 요구한 교육부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0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협의체
4. 그 밖에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또는 전문기관

제9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실습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시설 기준
2.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3.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면적이 확보되고, 다양한 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등의 건축 기준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이전 등의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내용·절차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이 법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소관 교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도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 평가·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내용 및 점검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책위원회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별로 구분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점검 항목별로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점검 결과,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

2.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3. 제1호·제2호 외의 교육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폐교·이전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시설안전인증 기준 및 등급·유효기간) ① 안전인증 기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별로 구분하여 마련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안전인증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정한다.

③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해

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단위로 실시하되,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등의 단위로 안전인증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축, 증축 등 건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안전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시설안전인증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작성)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

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안전점검등의 실시) ① 안전점검등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준공연도,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등급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교육시설로서, 사용되지 않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점검등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교육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제22조(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출한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해 부실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

등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한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결과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제23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제24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 계획에 따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내용을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입력하고,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제25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감독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를 말한다.

제26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른 건축승인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려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내용·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조 및 지반의 안전성, 통학로 안전 확보의 적정성 등 안전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등의 사업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안전펜스 설치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보완조치 계획서 및 조치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안전성평가 결과 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제2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관 지정) 교육부장관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 결과
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4.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및 정보공개 등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고의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31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32조(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전문기관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된 업무와 관련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시설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를 보유할 것

3. 그 밖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전문기관이 자진 철회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하
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

⑦ 전문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
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
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기관의 지
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
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안전원의 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
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안

전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

한 조사 업무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기준·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제3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500	2,000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500	2,000
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00	1,500	2,000
나.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1호	500	750	1,0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50	1,000
마.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1호			
1)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50		
2)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50		
3)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바.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2호	500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3호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50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50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50	350	500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4호	250	350	500
자.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5호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시설과	
연 락 처	044-203-6302, 6301